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 이용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설과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 산정지침에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4. 시설의 권리와 의무 :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보호

바.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또는 보증인)로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가 생활하는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1)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 4)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 5)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보할 의무
- 6)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 7)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 8)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마.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등의 비용변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비급여 항목 등의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제1항 1호에 의거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제1항 2, 3호에 의거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참조한다.

[방문요양]

- | | | |
|--------------|--------------|--------------------|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2. 일상가사지원서비스 |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
| 4. 일상생활서비스 | 5. 정서지원 | 6. 상담지원 |
| 7. 목욕지원서비스 | 8. 여가지원 | 9. 기타 그 밖의 재가복지서비스 |

[주야간보호]

- | | | |
|--------------|--------------|--------------------|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3.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 4. 인지활동지원 | 5. 여가활동지원 | 6. 정서지원 |
| 7. 급식서비스 | 8. 시설환경관리 | 9. 기타 그 밖의 재가복지서비스 |

나. 전 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동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나 항목에 의거, 법정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며 동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다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비급여 항목			주야간보호 비용 (주식 : 1일 1식 / 간식 : 1일 1식)		
해당여부	Y	N	주식 · 간식	산출기초	20일 기준
식재료비	○		2,000	2,000×20일	40,000
간식비용	○		500	500×20일	10,000
이·미용비		○	-	-	-

※ 상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물가변동 및 기관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다.

다.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 하고 이용자는 교부받은 명세서를 확인 후, 이용한 이용료(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지불한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제2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시설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